

감 사 위 원 회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실외 테니스장 바닥 포장 시공 및 공사감독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봉구, 서울시설공단

내 용

1. 실외 테니스장 바닥 평탄 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발생

도봉구(공원녹지과, 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2016. 12. 8. U기업(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동북권체육공원 조성사업(조경)”(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비 2,248백만원에 계약하여 수목 식재 및 체육시설, 보행로 등을 조성한 후 2018. 3. 31. 준공하였다.

이 건 공사로 조성되는 실외 테니스장의 바닥 표면 포장재인 아크릴 포장재는 (T=5mm, 면적 2,943㎡, 지급자재, 현장설치도) 2017. 7. 5. V기업(이하 ‘물품납품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152백만원에 “동북권체육공원 테니스장 아크릴포장재 구매 설치”(이하 ‘이 건 물품구매설치’라 한다) 계약을 맺어 2018. 3. 20. 물품검사 완료하였다.

아울러, 이 건 공사의 시공 전반사항 및 지급자재 검사·관리 등의 공사감독 업무는 2016. 12. 1. 서울시설공단(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에 공사감독 대행토록 하였다.

이 건 물품구매설치의 「동북권체육공원 테니스장 아크릴포장재 규격 및 설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따르면 물품납품자는 이 건 물품구매설치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기준에 부합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아크릴 표층을 공급해야 하며, 국제공인경기용 및 ◇◇◇◇◇협회 시설규정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품납품자는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 0.5%(◇◇◇◇◇협회 규정)의 기울기를 갖도록 하고 시공자가 선행공사로 이미 시공한 아스콘 기층 바닥의 평탄성이 최고 부위와 최저부위의 차가 3mm이내가 되도록 하며 평탄성 확보를 위해 아스콘 기층 공사시 반드시 입회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물품납품자는 아크릴 표층재를 시공하기에 앞서 기층의 평탄 불량을 확인하기 위해 물을 표면에 부어본 후 물이 고이는 부분의 깊이가 2mm 이상인 곳은 분필로 표시한 다음 표면이 완전히 건조되면 아크릴 리서페이서와 모래를 혼합한 스퀴즈나 미장용 막대기를 사용하여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물품납품자는 다짐 및 평탄작업 등 기반공사가 완료된 후 경사, 표면배수 처리 상태, 노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크릴 표층재를 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아크릴표층재를 납품(시공)하여야 하며 추후 평탄성에 의한 문제발생시 시공자와 각각 부담하여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동북권 체육공원 내 실외 테니스장을 현장점검 한 바, 2018. 12. 3. 강우 후 하루가 지난 상태의 테니스장 코트(4코트, 5,코트, 7코트) 일부 바닥면에 평탄성 불량으로 빗물이 자연 배수되지 않고 그대로 고여 길이 약 3~7mm, 면적 30㎡ (약 6개소 면적 합)가량의 물고임 현상이 확인되었다.

〈 그림1. 투수블록 포장임에도 강우 후 물고임 발생 〉



▲ 테니스 코트 평탄성 불량으로 강우시 자연배수되지 않고 물고임 발생 ▲ 물고임 깊이 최고 7mm (물품납품자 측정)

이와 같은 물고임 하자는 물품납품자가 선행공사로 시행된 테니스장 바닥 아스콘 기층면에 대한 평탄성 검사 및 평탄작업을 소홀히 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 결과 비가 내릴 경우 바닥 경사 방향으로 빗물이 자연 배수되지 않고 테니스장 바닥의 평탄이 불량한 부분에 빗물이 고이게 되는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2. 공사감독자 지급자재 검수업무 회피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설공단 간에 맺은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 제4조 대행사무 제1항〔별첨2〕“감독대행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에 따르면 지급자재 검수 및 관리는 공사감독자의 감독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감독자는 이 건 공사를 감독대행하면서 테니스장 아크릴포장은 지급자재의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이기에 감독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지급자재 검수 및 관리업무를 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회피 하였다. * 공사감독자의 지급자재(현장설치도) 검수·관리 거부로 발주자가 검수함.

그 결과 이 건 물품납품자가 당초 계약된 「동북권체육공원 테니스장 아크릴포장재 규격 및 설치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의 아크릴 포장재(지급자재) 평탄성 기준을 초과(기준 3mm이하, 실제 시공 최대 7mm) 하게 아크릴포장을 하여 강우시 물고임이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도봉구

발주자인 도봉구는 실외 테니스장 바닥 평탄 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하자에 대하여 보완시공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은 테니스장 바닥 물고임 하자와 관련하여 선행공사로 시행된 아스콘 기층 포장은 기계화 시공의 특성상 전체 면적에 대한 평탄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일부 물고임이 발생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이 현재 없는 상태인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아크릴포장재 지급자재 검수·관리 업무회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지급자재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일반 지급자재와 달리 계약업체가 납품 및 설치까지 완료하는 물품구매 설치로 이 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발주자로부터 현장설치도 지급자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에 필요한 자재규격 및 설치 시방서, 구매 내역서 등 일체의 서류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향후 현장설치도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업무한계와 관련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시공 품질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이용자의 불편 민원 발생 여부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시공 품질의 적정 여부는 계약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할 사안이지 단순히 준공 후 반년이 지난 현지 점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불편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불명확한 근거를 들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정밀시공으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공사감독기관의 답변으로는 부적절하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설공단 간에 맺은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 협약서」 제4조 대행사무 제1항〔별첨2〕“감독대행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 규정에서 “지급자재 검수 및 관리”는 공사감독자의 감독업무로 이미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위 협약서에서는 공사의 모든 시행단계별로 공사감독자와 발주자간의 업무의 책임한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의 주장과 달리 지급자재를 인도조건에 따라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현장설치도 지급자재는 이 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별건 사업이라 공사감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시설공단의 주장과 다르게 이 건 공사

관련하여 별도 물품구매설치 계약하여 설치된 웬스, 출입문 등 6종의 현장설치도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가 직접 검수 및 관리한 바 있어 주장의 일관성도 없다.

넷째, 서울시설공단은 공사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지급자재(현장설치도) 관련 일체의 서류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주자인 도봉구의 답변서에 따르면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를 공사감독자에게 공문 및 유선, 구두로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설공단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결국 서울시설공단은 뚜렷한 근거규정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의적 판단만으로 공사감독자의 본연의 업무인 지급자재 검수 및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부실시공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테니스장 코트 평탄성 불량에 따른 물고임 하자에 대하여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수주체를 결정하여 보완시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시정)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공사감독자가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 제4조 대행사무 제1항(별첨2) “감독대행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자재 검수 및 관리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②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